**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-446호**

#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

2023년 제1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(청사미화 분야) 공고 관련, 아래와 같이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16일

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

## 1. 면접시험 합격자

| 모집구분 | 합격자 응시번호 |
|---|---|
| 공무직근로자<br>(청사미화원/사원) | L-003 (박○○)<br>L-004 (김○○) |

※ 서류전형 합격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.

## 2.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

○ 대 상 : 면접시험 합격자

○ 제출기간 : 2023. 3.17. ~ 3.22. / 6일간

○ 제출장소 :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(2층)

※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, 지방자치인재개발원 / 063-907-5014

○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접수

○ 제출서류

- 주민등록증 (신분증) 사본 1부
- 채용 신체검사서 (별지서식) 1부 ※ 의료기관 발급, 증명사진 부착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) 1부
- 기본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) 1부

## 3. 기타 안내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임용자격, 결격사유, 신체검사, 서류 진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3.3.30.(목) 나라일터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하고,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.

※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서류 검증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○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(1개월 이내), 3개월 이내 동일 직종 결원 등으로 인해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예비합격자는 발표하지 않음

○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(☏ 063-907-501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별지서식】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

(앞쪽)

#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① 구 분 | ② 시험실시기관 | ③ 응시직명 | ④ 응시번호 | ⑤ 성 명 (한 자) | ( ) | 사 진 (3cm × 4cm) ※ 압인 또는 계인 |
| ⑥ 검사 시 |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| | | | | |
| ⑦ 재 사 용 | | | | ⑧ 생년월일 | | |

## 검 사 내 용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키 | cm | | 체 중 | kg | |
| 가슴둘레 | cm | | 혈 압 | | |
| (교정)시력 | 좌: ( ) 우: ( ) | 색 신 (색 각) | | (교정)청력 | 좌: ( ) 우: ( ) |
| 안 질 환 | | | 이비인후질환 | | |
| 치 아 | | | 호흡기질환 | | |
| 간 질 환 | | | 신경질환 | | |
| 소화기질환 | | | 피부질환 | | |
| 순환기질환 | | | 정신질환 | | |
| 비뇨기질환 | | | 혈청검사(매독) | | |
| 흉부X선 검사 | | | 기 타 | | |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검사 결과 합격 여부** | **[ ] 합 격 [ ] 불 합 격 [ ] 판정보류** | **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** | |
|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| 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| | |

「일반 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| | |
|---|---|
| 유효기간 | 판정일부터 1년 |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**[응시자]**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공무직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**[의료기관]**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'만성골수성백혈병'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  - '매독(syphilis)'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 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 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'혈소판 감소 자색반'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   ※ 판정 보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